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상에서 대상 및 조사 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구미시 주차수급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자 함.
- 나.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안전상 불가피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부지 또는 부지 인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면제 사항을 규정하며 우수 자원봉사자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및 주차장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 위임사항 정비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기준 완화 조항 신설(안 제14조의 2)
 - 철거시 주차대수 총합의 50% 완화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법령상 설치기준으로 조정(안 제18조)
 -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나. 주차요금 감면 포괄규정 삭제 및 대상 추가(안 제4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규정 삭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전액 감면
-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고장인 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전액 감면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50% 감면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다.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

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부설주차장 총”을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 별표 7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관련>

급지구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최고30분)	30분초과 매 10분마다	1일주차요금	월정기요금		
				주간	야간	주 · 야간
1급지	4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60,000원
2급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25,000원	40,000원
3급지	200원	100원	2,500원	25,000원	20,000원	30,000원

※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 ~ 10월 : 08:00 ~ 20:00
 - 나. 11월 ~ 3월 : 09:00 ~ 19:00
- 상기요금은 승용차, 15인승 이하승합차, 1.5T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이하 승합차, 1.5T초과 11T이하 화물자동차의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 * 1.5
 - 나. 45인승 초과 또는 11T초과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기준요금 * 2
-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송정동, 원평1.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2동, 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광평동, 인동동, 임오동, 진미동, 양포동, 상모사곡동
 - 나. 2급지 : 선산읍, 고아읍, 산동면
 - 다. 3급지 : 위 지역 외 기타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4조의2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1년간 면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 ○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	관련 증명서 제시
2.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다만,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함(3자녀 이상 가정 증명자료 제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 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 제시
3.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관련 증명서 제시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1대 － 시설면적150㎡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30㎡미만은 0.7대 전용면적 30㎡이상은 0.9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홀의 수 ×10),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타석의수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u> <u>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u> <u>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u> <u>다.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u>

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① -----

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
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
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
우에는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10.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

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 25.>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전문개정 2010. 10. 29.]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 요금 수입 감소(안 제4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주차 요금 감면에 따른 주차장 수입금 감소로 세입예산 감소가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615
100시간 이상 운전가능 자원봉사자 (만18세 ~ 64세)	1,001대×500원	500
예우대상 기업·근로자	100대×1,000원	100
최고장인	15×1,000원	15

※ 산출근거

- 운전가능 자원봉사자 1회 1시간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0원
발생(50% 감면시 500원)

- 예우대상 기업·근로자 및 최고장인 1회 1시간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0원 발생(100% 감면시 1,000원)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계 공업 7급 이민섭(054-480-6274)

소과 실 · 과		교통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주 광 하
	계 장	최 화 식
	담 당 자	이 민 섭 (480-6274)